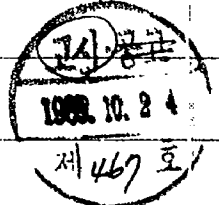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지27620- 2012	(전화 : 731 6417)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년			
시행일자	89. 10. 24			
보조기관 부시장 환경농지국장 농지과장	협조기관 			
기안책임자	조부환	발행처 시 장		
경유 수신 참조	각안장조	발신명의 시 장		
제목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1. 농지 27620-840 (89. 9. 5) 호 및 각부 조사보고내용과 관련 입니다.				
2.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부를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 기지정된 보호수중 고사되어 존재할 가치가 없는 보호수 를 산림법 제69조에 따라 밀집 고사한과같이 지정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및 해제수량 : 지정3주, 지정해제3주				
나. 내역 : 별첨				
첨부 : 고지문 (안) 1부 끝				
(제2안)				



3159

1505-25(2-1)일(1)갑
85. 9. 9. 승인 "내가야긴 종이 환경 높아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가 40-41 1989. 6. 8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갑음
1. 농지 27620-840 (89. 9. 5) 호 및 작부 조사보고내용과 관련된
2. 위호와 관련 산림법 제67조,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4
조 규정에 따라 민집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호수로 지정하고
모사하이 보존가치가 없는 보호수에 대하여 지정은 해제하였기 시달하니
가. 소유자및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지할것이며
나. 신규지정 보호수에 대하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에
정지를 기할것이며 해제된 보호수는 도시미관 지해요소및 위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표지판은 지체없이 회수할것이며 개사된곳에 보호수의 보호관리
지침 (농지 27620-881 89. 9. 20) 에 의거 갑음수종의 후계목을 식재하도록
알것.
3. 농지사업소장은 임부에 검교하기 바람.
첨부 :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1부 감
수신처 : 홍포, 도봉, 구로, 강남, 송파, 농지사업소장
(제3안)
수신 : 공모권 <i>488</i> 발신 : 환경농지국장
참조 : 공모계회담당관

제 목 : 시보 게재 의뢰

다음과 같이 시보게제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내용 : 보호수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2. 고시일자 : 산림법 제67조

첨 부 : 고시문 사본 1부, 같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제 467 호

보호수지정 및 지정해제

산림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1989. 10. .

서울특별시청

보호수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보호수 지정)

구분	지정번호	품 격	수종	주수	수 목 현 황				소 재 지	소유자
					수령	수고	흉고 둘레	수관 직경		
총로	1-1-49	구나무	은행나무	1주	원 400	■ 30	■ 6.7	■ 20	총로구 길교동 1리 (신화학교내)	신화 학교장
총로	1-1-5-42	동나무	느티나무	1주	200	25	4.0	20	총로구 길명동 216	국립
송파	1-21-10-43	동나무	회화나무	1주	220	13	2.4	7	송파구 길교동 248 (백제초기 석서중대)	서울 특별시

(보호수 지정해제)

번호	품 격	수종	주수	소 재 지	소 유 자	해 제 사 유
1-7-20	구나무	은행나무	1주	도봉구 미아동 670-28	이종심	교 사
1-21	서나무	느티나무	1주	강남구 삼성동 115	봉은사주지	교 사
1-2-33	구나무	느티나무	1주	구로구 개봉동 271-19	서울특별시	교 사